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

## 심사보고서

'97. 5. 28  
기획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97. 4. 7
- 회부일자 : '97. 4. 9

다. 상정일자 :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97. 4. 26)

· 심의보류

라. 재상정일자 :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97. 5. 22)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의결보류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97. 5. 28)

-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고등교육 희망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 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산업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활력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립 옥천전문대학 설치

### 나. 주요골자

- 옥천 전문대학은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함(안제1조)
- 대학운영비는 학생등록금, 정부지원금, 도재정 등으로 충당
- 대학의 학과, 학생정원, 학사는 학칙으로 정함(안제4조)
- 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교무를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함  
(안제6조)
- 대학의 운영, 관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안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 태 인)

충청북도 도립 전문대학 설치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본 전문대학을 설치하고  
자 하는 것으로

## 주요골자를 보면

- 옥천전문대학을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하고(안제1조)
- 대학운영비는 학생등록금,정부지원금,도재정 등으로 충당하며  
(안제3조)
- 대학의 학과,학생정원,학사는 학칙으로 정하고(안제4조)
- 대학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며(안제6조)
- 대학의 직제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안제9조)
- 대학의 운영,관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음  
(안제10조)

그리고 안제2조중 “6필지”에 둔다로 필지수를 명문화할 경우 문제 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교육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가 발생할 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본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 가 요망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립대학을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하고 대학운영비의 일부를 도재정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하여 향후 옥 천전문대학이 학생등록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도비지원의 부담감은 있으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 에게 고등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인력 수 요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당초 옥천전문대학을 설립할 때는 전액 국고로 보조 되며 도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7억여원에 달하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금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2004년 경에 가면 대학정원이 고등학교 학생수보다 많은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달 등에 따른 폐교사태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

○ 답변 : 옥천전문대학을 국립으로 설립한다면 우리 도에서 운영 및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현재 도립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도립으로 설립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승인한 사항으로 도의 직속 기관으로 설립되는 만큼 운영에 따르는 어느정도의 도비지원은 감수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미달사태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하여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2004년경 가면 대학정원이 고등학교 학생수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따라 옥천전문대학만이 정원미달로 인해 폐교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1. 수정이유

- 변동가능한 사항을 명문화할 경우 사유발생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이며
- 임용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데 자칫 의회에서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을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새로이 배열하고
- 대학의 관리, 운영에 있어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하여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임

### 2. 수정 주요골자

- 안제1조중 도립전문대학을 둔다를 “도립전문대학을 설치한다”로 함
- 안제2조중 금구리40번지외6필지에 둔다를 “금구리내에 둔다”로 함
- 안제3조중 대학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안제10조4호를 안제7조3항으로 신설하여 배열함
- 안제10조중 중요한 안건의 결정에 앞서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석 7명, 찬성 7명)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 설치조례안
- 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대비표